

(參照)

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

연 번	안 건 명	소관부서	소관위원회
1	○성남시'99년도제2회추경세입·세출예산(안)	기획예산과	행정경제
2	○성남시통·반설치조례개정조례(안)	총무과	"
3	○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(안)	중원구보건소	사회복지
4	○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(안)	중원구보건소	행정경제
5	○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(안)	교통행정과	도시건설
6	○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(안)의견청취	도시과	"
7	○성남시문화정보센터·시립도서관운영조례(안)	문화정보센터	사회복지
8	○성남시'99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	회계과	행정경제

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																				
1	'99제2회성남시 일반회계및특별 회 계 추 가 경 정 예산(안)	□ 제안이유 세입증감요인 발생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·세출정리가 불가피하여 '99.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'99 제2회 추경예산(안)</th><th>'99기정 예산액</th><th>증 감</th><th>%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649,199</td><td>602,189</td><td>47,010</td><td>7.8</td>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<td>477,355</td><td>427,651</td><td>49,704</td><td>11.6</td>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<td>171,844</td><td>174,538</td><td>△2,694</td><td>△1.5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'99 제2회 추경예산(안)	'99기정 예산액	증 감	%	계	649,199	602,189	47,010	7.8	일반회계	477,355	427,651	49,704	11.6	특별회계	171,844	174,538	△2,694	△1.5	기획예산과	행정경제
구 분	'99 제2회 추경예산(안)	'99기정 예산액	증 감	%																				
계	649,199	602,189	47,010	7.8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477,355	427,651	49,704	11.6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171,844	174,538	△2,694	△1.5																				
2	성남시통·반 설치조례개정 조례(안)	□ 제안이유 정부의 2차의 걸친 지방행정조직의 정원감축에 따라 통·반장에 대하여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직을 감축하고, 통·반장의 연령 상한선과 연임규정을 정하여 장기재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다수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. □ 주요골자 ○ 통·반조직의 확대 정비 (안 제3조) ○ 통·반장의 연령상한선 규정 (안 제6조) ○ 통·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, 통장의 연임기간 제한 (안 제7조) ○ 현재 통·반장의 임기를 「이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다」는 경과규정의 신설 (안 부칙제2조)	총 무 과	행정경제																				

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3	성남시보건소 수가조례개정 조례(안)	□ 제안이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('95. 12. 29. 법률 제5101호)되어 조례제정 근거 규정을 바꾸고, 진료비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무료혜택을 확대제공하며 업무조정으로 하자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 근거규정 개정 (안 제1조) ○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적용 (안 제2조) ○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및 수수료 납부방법 신설 (안 제3조) ○ 먹는물, 공중목욕탕등의 수질검사 시험신청 및 성적사교부 방법 개정 (안 제4조) ○ 수입의약품이나 예방접종 수수료 실비 징수 근거 마련 (안 제5조) ○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명시 (안 제6조)	중원구보건소	사회복지
4	성남시재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(안)	□ 제안이유 의료법시행규칙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 규정이 삭제되고(보건사회부령제945호 - '94. 9.27)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동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	중원구보건소	행정경제

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5	성남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(안)	□ 주요골자 ○ [별표1]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요액중 99번 내지 110번을 신설 - 의료기관(종합병원,병원)개설허가 사항 ([별표1] 일련번호 99~102) - 의료기관(의원)개설신고 사항(# 103~104) -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 사항 (# 105~106) - 치과기공소 인정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 사항(# 107~108) -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사항(# 109~110) □ 제안이유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중 주차장법령 개정(대통령령 제16428호 - '99. 6. 30)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민영노외주차장 신고사항 완화등 주차장 운영에 관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시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완화 (안 제8조) ○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(안 제11조제4항) ○ 노외주차장 8급지(주택가 소규모주차장)운영 기준 설정 (안 제12조의5) ○ 건축물 건축시 부설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에 따른 기준 보완 (안 제15조의3제6항) ○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(안 별표2)	교통행정과	도시건설

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6	성남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(안)의견 청취	□ 제안이유 ○야탑동 도축장 가동율이 20%로 폐업이 불가피하며, 악취등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축장이 폐업된 후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 ○야탑 ~ 서현동간 도로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도로선형 변경요청이 있으며, 변경노선의 선형이 당초보다 양호하고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사업비도 절감되어 도로선형을 변경결정 하고자 함 ○동원~대장동간 도로를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○2001년 세계디자인총회 및 박람회 개최시 각국 대표인사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숙박 시설 설치를 위하여 유원지 신설코자 함 □ 주요골자 ○도촌동 19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: 자연녹지 → 일반주거지역 ○야탑~서현동간 도로(대로2-11호선)변경결정 ○동원~대장동간 도로(중로3-26호선), 광장결정 및 변경결정 ○대장동 유원지, 공원,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 결정	도 시 과	도시건설

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7	성남시문화정보센터·시립도서관 운영조례(안)	□ 제안이유 ○ 도서 및 각종자료의 수집·보존·열람·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함으로써 ○ 지역사회의 문화·예술진흥과 정보화,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남시문화정보센터(시립도서관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□ 주요골자 ○ 명칭은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(시립도서관), 성남시중원문화정보센터(시립도서관), 성남시 분당문화정보센터(시립도서관), 성남시립중앙도서관”이라 하고 소재지는 “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224,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산10-21,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150번지”에 설치한다 (안 제2조) ○ 문화정보센터 운영·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, 법인, 단체,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,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안 제5조) ○ 위탁운영의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(안 제6조) ○ 문화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(안 제18조)	문화정보센터	사회복지

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8	성남시 99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	□ 제안이유 ○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속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대지를 처분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으로 조성 ○ 주차난이 심각한 성남동 등 4개동에 대하여 임시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공간제공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 ○ 벤처기업의 지원육성과 디자인 산업업종의 유치에 필요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예정부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수요에 적극 대처 ○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○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복지여건 해소로 주민복지욕구 충족과 향상을 도모코자 ○ 주민숙원사업인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을 제공코자 함 ○ 백현유원지와 백궁역 주변토지를 개발, 유람식 박물관과 상설전시장 및 호텔 등을 시설하여 세계 디자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코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취 득 - 토 지 : 56필지 421,012㎡ - 건 물 : 4동 2,089.7㎡ ○ 매 각 : 1필지 173.6㎡	회 계 과	행정경제